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제정 2012.04.02.>, <최종개정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적용하는 낙찰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라 한다)의 방법·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공사종류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02.28.>

1. (삭 제) <개정 2014.03.03., 2020.02.28>
2. 종합공사(토목, 건축공사) 평가기준 : [별표 2] <개정 2021.03.25.>
3. 전기·정보통신공사 평가기준 : [별표 3] <개정 2014.03.03., 2014.10.29>
4. 전문공사 평가기준 : [별표 4] <개정 2021.03.25.>
5. 소방시설, 문화재 등의 평가기준 : [별표 5] <개정 2021.03.25.>

②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다른 규정 포함)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③ 시공경험,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신인도의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나, 평가자료가 없거나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여하는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는 제7항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1.03.25.>

1. 시공경험평가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시공실적은 [붙임13] 시공실적 제출 및 평가방법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4.03.03.>

나. 최근 5년간 공사실적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등 관련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서 평가자료를 관리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협회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최근 5년간 시공경험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04.25.>

다. “나”호에 의해 직접 제출하는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에 의하며, 최근 5년간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공사사업종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시공실적을 [붙임13] 시공실적 제출 및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7.04.25., 2019.06.11>

2. 기술능력평가

가. 적격심사의 기술자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평가대상 기술자는 개찰일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후 관련협회에 소급하여 신고 또는 등록한 자는 기술자 평가에서 제외한다. (1) 토목, 건축, 전문,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공사 기술자(학력·경력기술자, 자격기술자)의 종류, 보유상황, 등급구분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에 입찰공고일 현재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기술자는 개찰일까지 유지하여야 한다.(2)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별표5]에서 정한 “철도안전전문기술자”를 요하는 공사의 경우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종류, 보유상황, 등급구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 입찰공고일 현재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기술자는 개찰일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05, 2015.11.09, 2018.03.28., 2020.11.26>

나.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은 ‘3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결산서로 평가하며, 업계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3.07.05.>

3. 경영상태 평가 <신설 2013.07.05.>

가. 경영상태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별표]에 의한다. 다만,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별표]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의 (A)재무제표 등에 의한 평가 또는 (B)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중에서 선택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해 평가한다. <신설 2013.07.05, 개정 2014.10.29.>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개정 2013.7.5., 2014.3.3)나-1. 위 나항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공단 전자조달시스템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나-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합병 후 제출한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신설 2013.07.05, 개정 2014.03.03., 2014.10.29>

다.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3.07.05.>

라. 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의 [별표] ‘2’ 주2)에 규정한 결산서에 의한다. <신설 2013.07.05.>

마.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결산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한다.(1) 관련협회로부터 우리 공단에 통보된 경우(2)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를 우리 공단에 직접 제출한 경우 <신설 2013.07.05.>

- 바. ‘마’목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우리 공단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바-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결산서는 ‘바’목의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별지 6호서식 준용] 상의 재무제표에 의거 평가한다. <신설 2013.07.05.>
- 사.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라’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년도말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 또는 ‘바-1’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토보고서 상의 감사 및 검토의견이 ‘한정의견’(또는 한정검토보고서)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또는 부적정검토보고서) 또는 ‘의견거절’(또는 검토결론 표명거절) 10/100을 감점 처리하며, ‘마’목의 규정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의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신설 2013.07.05.>
4. 신인도 평가는 우리 공단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의 [별표2] 3. 신인도 평가를 적용한다. 다만, 심사항목 중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2] 3. 다 (11) 평가 시 감점항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3.07.05, 개정 2018.03.28., 2022.01.11>
5. 해당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입찰공고시 명시하는 공사에 한함)의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신설 2013.07.05, 개정 2014.03.03., 2018.03.28>
6. 관련협회가 심사분야별·항목별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우리 공단에 제출된 자료가 없는 업종은 해당 심사분야 또는 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3.07.05.>
7. 관련협회가 관리하는 자료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신설 2013.07.05.>
- ④ 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⑤ 복합공사의 평가방법은 시공경험 및 기술자평가를 해당 공사 각각에 대하여 평가한 후 해당 공사 구성비율에 의하여 종합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복합공사란 평가대상 업종 중 해당 공사의 추정금액이 전체공사 추정금액의 20%이상인 2개 이상의 공사로 구성된 경우를 말하며 해당 공사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 시 명시한다. <개정 2014.03.03.>
- ⑥ 입찰가격 평가는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 금액을 각각 제외하여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적용한다. <신설 2019.09.27, 개정 2020.11.26.>
- ⑦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참여하는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심사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평가자료는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 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신설 2021.03.25.>
1. 시공경험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1.03.25.>
- 가.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신설 2021.03.25.>

나. 2026. 12. 31. 까지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신설 2021.03.25, 개정 2024.01.17.>

다. (삭제) <신설 2021.03.25, 개정 2024.01.17.>

라.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2021.1.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취득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전문업종별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신설 2022.07.15.>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 협회가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1.03.25.>

가.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신설 2021.03.25.>

나.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은 해당 전문공사 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 평가) <신설 2021.03.25.>

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 입찰의 시공경험은 (주력)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하며, 그 외 심사분야 및 심사항목은 별표2 및 별표 4를 따른다. <신설 2022.01.11.>

3. 경영상태(영업기간) : 다음 각목의 방법 및 붙임3, 붙임4, 붙임5에 따라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신설 2021.03.25.>

가.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참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1.03.25.>

나.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명시한 종합공사 참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1.03.25.>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개정 2020.02.28.>

2. 사전심사대상공사 이외 공사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시공경험과 기술능력 항목 중 기술자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 및 기술자 보유상황에 공사 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4.03.03.>

나. 경영상태, 기술능력 항목 중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평가한다. <개정 2014.03.03.>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소재한 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 참여에 대한 가산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단서조항 폐지, 개정 2022.7.15.)

<개정 2013.07.05, 2014.03.03, 2018.03.28., 2022.07.15>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00분의 100이상인 경우(다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광역철도사업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수탁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에는 제2조 평가기준 [별표1] 내지 [별표5]에서 정한 평점에 합산시공비율의 100분의 50을 가산 평가하며 가산평가비율은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07.05., 2014.03.03>
2. 해당공사 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가산평가 비율은 해당 각 지역에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3.>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은 시공경험평가, 기술능력평가, 경영상태평가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평가분야별로 평점을 산정한 후 최종분야별 평점에 가산하여 평가한다.
4. 해당공사가 지역제한경쟁으로 공고된 공사와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의 경우 또는 해당 지역업체가 10인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가산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03.03.>
5. 제1호의 규정은 제2호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③ 삭제 <2018.03.28.>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이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해당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⑤ 삭제 <2018.03.28.>

제4조(심사세부기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해당공사 수행능력, 시공계획의 적정성,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 추정될 때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제2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3., 2020.02.28>

제5조(제출서류 등)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가 통보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할 적격심사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도 종합평점이 공사 규모별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적격심사 포기내용이 포함된 공문의 제출로 심사서류 제출을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2015.11.09>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2. 시공실적증명서(필요시)
3. 최근 결산년도의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필요시)
4. 신인도관련 증빙서류(필요시)
5. 현장관리조직표 (필요시)
6.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등의 인적사항 및 경력증명서 (필요시)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7. 기타 공사관리계획서, 산출내역서 집계표, 취업제한 대상자 고용확인서 등(필요시) <개정 2015.11.09., 2020.02.28>
- ② 적격심사시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관련 기술자가 다른 공사현장과 중복 배치로 확인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중복배치된 기술인력일 경우 기존공사의 잔여공기(적격심사서류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내)등을 감안할 때 해당공사 착공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교체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03.03.>
- ③ (삭 제) <개정 2020.02.28.>
- ④ (삭 제) <개정 2020.02.28.>
- ⑤ 제1항에 의거 제출된 서류가 미비되거나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서류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 ⑥ 제3항 및 제5항에 의거 요청한 보완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및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⑦ 입찰공고시계약담당은 입찰참가자 또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공단 전자조달시스템에 사전 등록한 후 시스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자로 적격심사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경우 낙찰자 결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07.05.>

1. (삭 제) <개정 2020.02.28.>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 : 95점 이상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 종합평점이 동항 각호의 해당 점수에 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 순으로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③ 재공고 입찰결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합평점이 공사 규모별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가 없을 때에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85점이상인 경우에는 공단 계약심의위원회운영기준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해당 공사의 시장성, 입찰현황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3.03., 2020.02.28>
- ④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가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03.25.>

제7조(적격심사 제외)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이하 “부도 등” 이라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03.03.>

- ②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03.03.>

③ <삭 제> <개정 2014.03.03.>

④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가 부도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격 사유 해당여부를 심사·결정한다.

⑤ 계약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출석발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결격여부에 대한 판정은 재심사요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⑦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해당공사 수행능력 평가점수, 시공계획의 적정성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공사규모별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4.03.03.>

⑧ 제6조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07.02.>

1. 재료비·노무비·경비 <신설 2020.07.02.>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설 2020.07.02.>

⑨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신설 2020.07.02.>

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신설 2020.07.02.>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신설 2020.07.02.>

⑩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신설 2020.07.02.>

1. (제9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 100) <신설 2020.07.02.>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신설 2020.07.02.>

제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03.03.>

② 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3., 2014.10.29>

③ (삭제) <개정 2014.10.29., 2020.11.26>

④ (삭제) <개정 2014.03.03., 2020.11.26>

⑤ 공단 전자조달시스템에 사전 등록하여 전자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1.26.>

[제목개정 2014.10.29.]

제9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등 관련 계약예규와 사전심사세부기준 등 우리 공단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② 이 기준 내용 중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2.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에 대하여는 해당분야별 평가의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부 칙 》

- ① 이 기준은 2012년 04월 02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대상 공사 부터 적용한다.
- ③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적격심사기준(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처-3473, 2011.4.26.)은 폐지한다.

《 부 칙 》

- ① 이 기준은 2013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대상 공사부터 적용한다.
- ③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적격심사기준(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처-3361, 2012.4.2.)은 폐지한다.

《 부 칙 》

- ① 이 기준은 201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대상 공사부터 적용한다.
- ③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적격심사기준(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처-7221, 2013.7.5.)은 폐지한다.

《부칙》

- ① 이 기준은 2014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대상 공사부터 적용한다.

- ③ 제8조제3항의 공단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감점 적용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 ④ [붙임 7] 신인도평가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및 금품, 향응제공 등 청렴계약이행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감점 적용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 ⑤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적격심사기준(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처-2217, 2014.3.3.)은 폐지한다.

《부칙》

- ① 이 기준은 201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대상 공사부터 적용한다.
- ③ 제8조제3항의 공단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감점 적용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 ④ [붙임 7] 신인도평가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감점 적용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 ⑤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적격심사기준(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처-11120, 2014.10.29.)은 폐지한다.

《 부 칙 》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 ③ (신인도 평가 바. 항목에 관한 적용례) [붙임7] 신인도 평가의 바. 항목 중 A, C.는 이 기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안전사고 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04.25.)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05월 02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03.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04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06.1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09.2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02.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07.0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09.02.)

이 기준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1.2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03.2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붙임]3은 가중평균비율 발표 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1.1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07.1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07.2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01.1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10.3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종합공사(토목, 건축공사)의 평가기준 (개정 2013.7.5., 2014.3.3., 2014.10.29., 2017.4.25., 2020.2.28. 2021.3.25., 2022.1.11., 2023.7.27., 2024.10.31.)

구분	심사항목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경우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A) 또는 (B) 중 택일 적용	15	1.1(A)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입찰공고 시 기준명시 *평가방법은 [붙임 1] 적용	15	등급 (해당공사기준) 점수 A.150%이상 15.0 B.100%이상 13.0 C. 75%이상 11.5 D. 50%이상 10.0 E. 30%이상 8.5	10	등급 (해당공사기준) 점수 A.100%이상 15.0 B. 75%이상 13.0 C. 50%이상 11.5 D. 30%이상 10.0 E. 10%이상 8.5	5	등급 (해당공사기준) 점수 A. 75%이상 10.0 B. 60%이상 8.5 C. 45%이상 7.0 D. 30%이상 6.0 E. 10%이상 5.0	평가 제외	평가 제외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5년간 해당공사 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평가방법은 [붙임1] 적용		15		-최근 5년간 해당공사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평점=실적계수×15 (단, 평점상한은 15점) *실적계수 = 총실적 합계액÷(설계금액×3)		10		-최근 5년간 해당공사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평점=실적계수×10 (단, 평점상한은 10점) *실적계수=총실적합계액 ÷(설계금액×1)		
	1.2 .기술능력평가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1.3. 경영상태 평가	15	(A)재무제표 등에 의한 평가= [붙임3] 적용 (B)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붙임6] 에 의한 평점 ×15/35	15	(A)재무제표 등에 의한 평가= [붙임4] 적용 (B)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붙임6] 에 의한 평점 ×15/35	10	(A)재무제표 등에 의한 평가=[붙 임5] 적용 (B)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붙임6] 에 의한 평점 ×10/35	5	(A)재무제표 등에 의한 평가=[붙 임5-1] 적용 (B)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붙임6] 에 의한 평점 ×5/35	10	(A)재무제표 등에 의한 평가= [붙임5] 적용 (B)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붙임6] 에 의한 평점 ×10/35
	1.4 신인도평가	±0.9	평점=[붙임7]에 의한 평점 합계 ×0.9/3 단, 신인도 심사항목 중 나.(8)을 평가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는 배점한도 부여	±0.5	평점=[붙임7]에 의한 평점 합계 ×0.5/3 단, 신인도 심사항목 중 나.(8)을 평가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는 배점한도 부여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1.5 특별신인도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2	①업종별 최근5년간 실적합계 액이 해당공사 설계금액 이 상인 경우 가산평가 ②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 사업자가 모두 참여하는 입찰의 특별신인도는 기준 제2조제7항 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준용해 평가
1.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3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3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1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1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시공 계획 적정 성	2.1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10	배점한도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2.2기타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2	평점=[붙임9]에 의한 평점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2.3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8	배점한도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2.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20	2.1~2.3의 항목별 평점합계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3.입찰가격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최저평점은 2점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50	평점=50-2× (88/100-입찰가격/ 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0.5% 이상인 경우에는 45점으로 평가	70	평점=70-4× (88/100-입찰가격/ 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9.25% 이상인 경우에는 65점으로 평가	80	평점=80-20× (88/100-입찰가격/ 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8.25% 이상인 경우에는 75점으로 평가	90	평점=90-20× (88/100-입찰가격/ 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8.25% 이상인 경우에는 85점으로 평가	90	평점=90-20× (88/100-입찰가격/ 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8.25% 이상인 경우에는 85점으로 평가
4.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평가 제외	-10	[붙임 12] 적용	-10	[붙임 12] 적용	-10	[붙임 12] 적용	-10	[붙임 12] 적용

[별표 3] 전기·정보통신공사의 평가기준 (개정 2014.3.3., 2014.10.29., 2017.4.25., 2019.6.11., 2020.2.28., 2021.3.25., 2022.1.11., 2023.7.27., 2024.10.31.)

구분	심사항목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8천만원 미만인 경우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 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15	1.1(A)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입찰공고 시 기준명시 *평가방법은 [붙임 1] 적용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A) 또는 (B) 중 택일 적용		등급(해당공사기준) 점수 A. 100%이상 15.0 B. 80%이상 13.0 C. 50%이상 11.5 D. 30%이상 10.0 E. 10%이상 8.5										
	1.2 .기술능력평가	5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입찰 - 최근 5년간 해당공사 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평가방법은 [붙임1] 적용	10	- 최근 5년간 해당공사 업종별 공사 실적(금액) *평점 =실적계수×10 (단, 평점상한은 10점) *실적계수=총실적합계액 ÷(설계금액×2)	10	- 최근 5년간 해당공사 업종별 공사 실적(금액) *평점 =실적계수×10 (단, 평점상한은 10점) *실적계수 = 총실적합계액 ÷(설계금액×1)	10	- 최근 5년간 해당공사 업종별 공사 실적(금액) *평점 =실적계수×10 (단, 평점상한은 10점) *실적계수 = 총실적합계액 ÷(설계금액×1/2)	5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해당업종구분없이평가) *평점=실적계수×5 (단, 평점상한은 5점) *실적계수=총실적합계액 ÷(설계금액×1/2)	평가 제외	
	1.3. 경영상태 평가	15	1.1(B) 평가일 경우만 적용 평점=[붙임2]에 의한 평점	5	1.1(B) 평가일 경우만 적용 평점=[붙임2]에 의한 평점	5	1.1(B) 평가일 경우만 적용 평점=[붙임2]에 의한 평점	5	1.1(B) 평가일 경우만 적용 평점=[붙임2]에 의한 평점	5	(A)재무제표 등에 의한 평가 [붙임5-1] 적용 (B)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붙임6] 에 의한 평점 ×5/35	10	(A)재무제표 등에 의한 평가 [붙임5] 적용 (B)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붙임6] 에 의한 평점 ×10/35
	1.4 신인도평가	±0.9	(A)재무제표 등에 의한 평가 [붙임3] 적용 (B)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붙임6] 에 의한 평점 ×15/35	15	(A)재무제표 등에 의한 평가 [붙임4] 적용 (B)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붙임6] 에 의한 평점 ×15/35	±0.5	평점= [붙임7]에 의한 평점 합계×0.5/3	±0.5	평점= [붙임7]에 의한 평점 합계×0.5/3	평가 제외	평가 제외		
	1.5 특별신인도		평점= [붙임7]에 의한 평점 합계×0.9/3	±0.5	평점= [붙임7]에 의한 평점 합계×0.5/3	30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2	업종별 최근5년간 실적합 계액이 해당공사 설계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평가		
	1.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3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3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1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1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1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시공 계획 적정 성	2.1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10	배점 한도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2.2기타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2	평점=[붙임9]에 의한 평점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2.3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8	배점 한도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2.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20	2.1~2.3의 항목별 평점합계	70	평가 제외	70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3.입찰가격 평가	50	평점=50-2× (88/100-입찰 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0.5%이상인 경우에는 45점으로 평가	70	평점=70-4× (88/100-입찰 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9.25%이상인 경우에는 65점으로 평가	90	평점=70-20× (88/100-입찰 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8.25%이상인 경우에는 65점으로 평가	90	평점=90-20× (88/100-입찰 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8.25%이상인 경우에는 85점으로 평가	90	평점=90-20× (88/100-입찰 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8.25%이상인 경우에는 85점으로 평가			
4.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평가 제외	-10	[붙임 12] 적용	-10	[붙임 12] 적용	-10	[붙임 12] 적용	-10	[붙임 12] 적용			

[별표 4] 전문공사의 평가기준 (개정 2014.3.3., 2014.10.29., 2017.4.25., 2020.2.28., 2021.3.25., 2022.1.11., 2023.7.27., 2024.10.31.)

구분	심사항목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 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15	1.1(A)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입찰공고 시 기준명시 *평가방법은 [붙임 1] 적용	15	등급(해당공사기준) 점수 A. 150%이상 15.0 B. 100%이상 13.0 C. 75%이상 11.5 D. 50%이상 10.0 E. 30%이상 8.5	15	등급(해당공사기준) 점수 A. 100%이상 15.0 B. 75%이상 13.0 C. 50%이상 11.5 D. 30%이상 10.0 E. 10%이상 8.5	15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A) 또는 (B) 중 택일 적용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입찰 - 최근 5년간 해당공사 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평가방법은 [붙임1] 적용		15		-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 실적(금액) *평점=실적계수×15 (단, 평점상한은 15점) *실적계수 = 총실적합계액 ÷(설계금액×3) *단, 제도공사 실적계수=총 실적합계액÷설계금액							15	-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 실적(금액) *평점=실적계수×15 (단, 평점상한 15점) *실적계수=총실적합계액 ÷(설계금액×3)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은 [붙임1] 적용 *단, 제도공사 설계금액 상 한은 17억원임	15	-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 실적(금액) *평점=실적계수×5 (단, 평점상한 5점) *실적계수 = 총실적합계액 ÷(설계금액×1/2)	5
	1.2 기술능력평가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1.3 경영상태 평가	15	(A)재무제표 등에 의한 평점= [붙임3]적용 (B)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점=[붙임6]에 의한 평점 ×15/35	15	(A)재무제표 등에 의한 평점= [붙임4]적용 (B)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점=[붙임6]에 의한 평점 ×15/35	15	(A)재무제표 등에 의한 평점= [붙임4]적용 (B)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점=[붙임6]에 의한 평점 ×15/35	5	(A)재무제표 등에 의한 평점= [붙임5-1]적용 (B)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점= [붙임6]에 의한 평점 ×5/35	5	(A)재무제표 등에 의한 평점= [붙임5-1]적용 (B)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점= [붙임6]에 의한 평점 ×5/35	10	(A)재무제표 등에 의한 평점= [붙임5]적용 (B)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점 ×10/35					
	1.4 신인도평가	±0.9	평점=[붙임7]에 의한 평점 합계×0.9/3	±0.5	평점=[붙임7]에 의한 평점 합계×0.5/3	±0.5	평점=[붙임7]에 의한 평점 합계×0.5/3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1.5 특별신인도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2	①업종별 최근5년간 실적합 계액이 해당공사 설계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평가 ②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 건설사업자가 모두 참여하 는 입찰의 특별신인도는 기 준 제2조제7항제1호나목 또 는 다목을 준용해 평가	2	①업종별 최근5년간 실적합 계액이 해당공사 설계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평가 ②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 건설사업자가 모두 참여하 는 입찰의 특별신인도는 기 준 제2조제7항제1호나목 또 는 다목을 준용해 평가				
1. 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3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3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3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1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1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1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 시공 계획 적정 성	2.1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10	배점한도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2.2 기타 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2	평점=[붙임9]에 의한 평점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2.3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8	배점한도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2. 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20	2.1~2.3의 항목별 평점합계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3. 입찰가격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최저평점은 2점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50	평점=50-2× (88/100-입찰 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0.5%이상인 경우에는 45점으로 평가	70	평점=70-4× (88/100-입찰 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9.25%이상인 경우에는 65점으로 평가	70	평점=70-20× (88/100-입찰 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8.25%이상인 경우에는 65점으로 평가	90	평점=90-20× (88/100-입찰 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8.25%이상인 경우에는 85점으로 평가	90	평점=90-20× (88/100-입찰 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8.25%이상인 경우에는 85점으로 평가	90	평점=90-20× (88/100-입찰 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8.25%이상인 경우에는 85점으로 평가					
4.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평가 제외	-10	[붙임 12] 적용		[붙임 12] 적용	-10	[붙임 12] 적용	-10	[붙임 12] 적용	-10	[붙임 12] 적용					

[별표 5] 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의 평가기준 (개정 2014.3.3., 2014.10.29., 2017.4.25., 2020.2.28., 2021.3.25., 2022.1.11., 2023.7.27., 2024.10.31.)

구분	심사항목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15	등급(해당공사기준) 점수 A. 150%이상 15.0 B. 100%이상 13.0 C. 75%이상 11.5 D. 50%이상 10.0 E. 30%이상 8.5	15	등급(해당공사기준) 점수 A. 100%이상 15.0 B. 75%이상 13.0 C. 50%이상 11.5 D. 30%이상 10.0 E. 10%이상 8.5	15	등급(해당공사기준) 점수 A. 100%이상 15.0 B. 75%이상 13.0 C. 50%이상 11.5 D. 30%이상 10.0 E. 10%이상 8.5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A) 또는 (B) 중 택일 적용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입찰 -최근 5년간 해당공사 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평가방법은 [붙임 1] 적용		15		-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 실적(금액) *평점=실적계수×15 (단, 평점상한은 15점) *실적계수 = 총실적합계액 ÷(설계금액×3)				
	1.2 .기술능력평가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1.3. 경영상태 평가	15	(A)재무제표 등에 의한 평가 [붙임3] 적용 (B)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붙임6]에 의한 평점 ×15/35	15	(A)재무제표 등에 의한 평가 [붙임4] 적용 (B)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붙임6]에 의한 평점 ×15/35	15	(A)재무제표 등에 의한 평가 [붙임4] 적용 (B)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붙임6]에 의한 평점 ×15/35	5	(A)재무제표 등에 의한 평가 [붙임5-1] 적용 (B)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붙임6]에 의한 평점 ×5/35	10	(A)재무제표 등에 의한 평가 [붙임5] 적용 (B)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붙임6]에 의한 평점 ×10/35
	1.4 신인도평가	±0.9	평점= [붙임7]에 의한 평점 합계×0.9/3	±0.5	평점= [붙임7]에 의한 평 점합계×0.5/3	±0.5	평점= [붙임7]에 의한 평 점합계×0.5/3		평가 제외		평가 제외
	1.5 특별신인도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2	업종별 최근5년간 실적합 계액이 해당공사 설계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평가
1.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3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3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3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1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1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시공 계획 적정 성	2.1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10	배점한도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2.2기타 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2	평점=[붙임9]에 의한 평점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2.3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8	배점한도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2.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20	2.1~2.3의 항목별 평점합계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3.입찰가격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최저평점은 2점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50	평점=50-2× (88/100-입찰 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0.5%이상인 경우에는 45점으로 평가	70	평점=70-4× (88/100-입찰 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9.25%이상인 경우에는 65점으로 평가	70	평점=70-20× (88/100-입찰 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8.25%이상인 경우에는 65점으로 평가	90	평점=90-20× (88/100-입찰 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8.25%이상인 경우에는 85점으로 평가	90	평점=90-20× (88/100-입찰 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8.25%이상인 경우에는 85점으로 평가	
4.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평가 제외	-10	[붙임 12] 적용	-10	[붙임 12] 적용	-10	[붙임 12] 적용	-10	[붙임 12] 적용	

[붙임 1] (개정 2013.7.5., 2014.3.3., 2015.11.09., 2017.04.25., 2019.06.11., 2020.2.28., 2021.3.25., 2024.10.31.)

시공경험 평가방법

- 1) 동일공사실적 평가는 구성원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2) 심사항목의 “A”와 “B”는 택일하여 적용한다.
- 3) 실적금액은 최종 준공금액(지급자재대가 포함. 다만, 전기공사, 통신공사, 신호공사, 궤도공사 등은 제외)을 기준으로 한다.
- 4)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개정 2017.04.25., 2019.06.11., 2020.2.28)
 - ①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공사, 전기, 정보통신 등)로 분류한 실적을 말한다.
 - ② (삭제)
 - ③ 소방공사의 경우 설계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실적계수 산정시 적용하는 설계금액은 50억원으로 간주하여 실적계수를 산정한다.
 - ④ 추정가격 30억원미만인 **종합공사, 전문공사, 소방시설, 문화재** 공사의 실적계수 산정은 (설계금액×2)를 적용한다.
 - ⑤ 추정가격 10억원미만인 전문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공사 등의 실적계수산정은 (설계금액×0.5)를 적용한다.
 - ⑥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공사의 공동수급체에 포함된 신설업체에 대한 실적계수 산정은 다음과 같다. 단,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문화재 공사 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공사의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업종별 공사실적이 설계금액의 1/2배이상 3배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설계금액의 3배로 한다.
 -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업종별 공사실적이 설계금액의 1/2배이상 2배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설계금액의 2배로 한다.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업종별 공사실적이 설계금액의 1배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설계금액의 1배로 한다.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문

화재공사의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업종별 공사실적이 설계금액의 1/2배이상 1.5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설계금액의 1.5배로 한다.

- 추정가격 3억원 미만 공사의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업종별 공사실적이 설계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설계금액의 1/2배로 한다.

-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

-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은 20% 이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은 40% 이하이어야 한다. 단, 위반시 모든 신설업체에 대한 특례적용을 제외한다.

⑦ 실적계수 산정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합병등의 경우에는 “붙임13(동일공사 시공실적 제출·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6) 공사실적에 대하여 가중치부여는 다음과 같다. 다만, “4)의 최근 5년(3년)간 업종별 공사실적”은 제외한다. (개정 2015.11.09.)

① 고속철도공사

- 고속철도 공사실적 : 0.20
- 일반철도 공사실적 : 0.15
- 도시철도 또는 경전철 공사실적 : 0.10

② 일반철도공사

- 고속철도 또는 일반철도 공사실적 : 0.20
- 도시철도 또는 경전철 공사실적 : 0.15

③ 도시철도 또는 경전철 공사

-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경전철 공사실적 : 0.20

④ 최근 10년간 공사실적

- 5년이내 공사실적 : 0.10
- 5년초과 10년이내 공사실적 : -0.10

⑤ 가중실적 산정방식: 실적×[1+{(①또는②또는③항목 해당가중치)+(④항의 해당가중치)}]

7)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이상) 중 종합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등은 해당업종 구분없이 평가하고, 전문공사는 해당업종을 평가한다. (신설 2021.3.25.)

[붙임 2] (개정 2013.7.5., 2014.3.3., 2017.04.25., 2018.03.28., 2019.06.11., 2020.2.28., 2020.11.26.)

기술능력 평가방법

- 1) 건설공사(토목, 건축공사), 전문공사(궤도공사제외), 소방시설, 문화재공사는 입찰참가 자격사전심사기준[별표2]에서 정한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기술능력평가의 심사항목별 평점합계 × 13/50을 적용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평가기준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개발투자비율 외의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2) 전기, 정보통신공사의 기술자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다. 다만, 기술자 사망 등이 발생할 시 평가대상 기술자를 변경할 수 있다.

구분	(삭 제)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추정가격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경력기술자 등급 합산	평점	경력기술자 등급 합산	평점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A. 3 이상 B. 2 이상 C. 1 이상	5.0 4.0 3.0	A. 2 이상 B. 1.5 이상 C. 0.75 이상	5.0 4.0 3.0
일반 기술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시공지원 기술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주 >

- ① 경력기술자는 초급기술자이상으로서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시공업무(유지 · 보수 업무 포함)에 3년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다만, 전차선공사 및 신호공사는 1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의 산식에 따른다. (개정 2019.06.11.)

$$\text{경력기술자 등급} = \sum \text{등급계수} \times \text{경력계수} \times \text{관리능력계수}$$

- 1) 등급계수 : 특급 1.00, 고급 0.75, 중급 0.50, 초급 0.25
- 경력계수 : 5년이상 1.10, 9년이상 1.15, 12년이상 1.20
- 관리능력계수 : 3년이상 1.10, 6년이상 1.15, 9년이상 1.20

2) 등급계수, 경력계수, 관리능력계수는 관련협회가 발급한 기술자 경력증명서에 의해 확인하며, 관리능력계수는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 경력을 적용한다.

② 경력기술자의 경력기간산정에 있어서는 철도공사 시공에 참여한 년수에 따라 다음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가) 5년이상 경력자 : 0.20, 나) 3년이상 경력자 : 0.15, 다) 2년이상 경력자 : 0.10

③ (삭 제)

④ (삭 제)

3) 궤도공사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붙임 3] (개정 2014.3.3., 2020.7.2., 2021.3.25., 2022.1.11.)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평가요소	평가등급	배점	비고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A. 50% 미만 B. 75% 미만 C. 100% 미만 D. 125% 미만 E. 125% 이상	7.0 6.3 5.6 4.9 4.2	▶ 업종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부채비율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 150% 이상 B. 120% 이상 C. 10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6.0 5.4 4.8 4.2 3.6	▶ 업종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유동비율
다. 영업기간	A. 5년 이상 B. 5년 미만 ~ 3년 이상 C. 3년 미만 ~ 2년 이상 D. 2년 미만	2.0 1.7 1.5 1.3	▶ 해당업체의 최초 면허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 주 >

- 1)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건설업체의 가중평균비율(직전년도 내의 정기결산서 기준 심사항목별 건설업체의 분모합계액 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여 평가함. (개정 2021.3.25.)
 - 1-1)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의한 평가는 건설업체의 가중평균비율 산정 시 기준이 된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 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하며, 감사 및 검토의견에 따라 1-5)를 준용하여 감점처리함. (신설 2021.3.25.)
 - 1-2) 해당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 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함. (신설 2021.3.25.)
 - 1-3) 해당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지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봄.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향후 경영상태평가지 최초 결산서로 봄. (신설 2021.3.25.)
 - 1-4) 해당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1-3)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신설 2021.3.25.)
 - 1-5) 1-1)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연도말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처리하며, 1-3) 및 1-4)에 따라 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봄. (신설 2021.3.25.)
- 2) 평가결과 음(-)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한다.

- 3) “가”항의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음(-)의 수치인 경우에는 이를 “E등급” 평가한다.
- 4) “나”항의 평가시 유동부채가 “0”인 경우에는 “A 등급”으로 평가한다.
- 5) 부도, 파산 또는 기타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상태 평가에서 제외한다.
- 6) (폐지 2021.3.25.)
- 7)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등록을 말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28호>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을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등록으로 봄)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사업에도 준용) **(개정2022.1.11.)**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붙임 4] (개정 2014.3.3., 2020.11.26., 2021.3.25., 2022.1.11.)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이상)

평가요소	평가등급		배점	비고
	A공사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B공사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문, 전기·통신, 소방, 문화재공사 등)		
가. 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A. 50% 미만	A. 100% 미만	7.0	▶ 업종별 평균부채 비율에 대한 해 당업체 부채비율
	B. 75% 미만	B. 130% 미만	6.3	
	C. 100% 미만	C. 160% 미만	5.6	
	D. 125% 미만	D. 190% 미만	4.9	
	E. 125% 이상	E. 190% 이상	4.2	
나.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 150% 이상	A. 100% 이상	6.5	▶ 업종별 평균유동 비율에 대한 해 당업체 유동비율
	B. 120% 이상	B. 90% 이상	5.7	
	C. 100% 이상	C. 80% 이상	5.0	
	D. 70% 이상	D. 70% 이상	4.3	
	E. 70% 미만	E. 70% 미만	3.6	
다. 영업기간	A. 3년 이상	A. 3년 이상	1.5	▶ 해당업체의 최초 면허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 사기준일까지의 기간
	B. 3년 미만 ~ 1년 이상	B. 3년 미만 ~ 1년 이상	1.3	
	C. 1년 미만	C. 1년 미만	1.1	

< 주 >

-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보고서로 평가가능하며, 정기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평가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음 (개정 2021.3.25.)
- 2) (폐지 2021.3.25.)
- 3) (폐지 2021.3.25.)
- 4) (폐지 2021.3.25.)
- 5) (폐지 2021.3.25.)
- 6) (폐지 2021.3.25.)
- 7) (폐지 2021.3.25.)
- 8) (폐지 2021.3.25.)
- 9)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등록을 말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28호>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을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등록으로 봄)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준용) (개정2022.1.11.)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이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이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나. 새로이 등록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붙임 5] (개정 2014.3.3.)

추정가액 10억원미만 3억원 이상과 2억원 미만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공사는 8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1억원미만)

평 가 요 소	평 가 등 급	배 점	비 고
가. 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A. 100% 미만 B. 130% 미만 C. 160% 미만 D.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부채비율
나.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 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5.0 4.5 4.0 3.5 3.0	▶ 업종별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유동비율

< 주 >

- 1) 평가요소별 업체평균비율은 관련협회에서 발표한 업체평균비율로 하되, 최근년도 업체 평균비율 발표이전까지는 종전 평균비율을 적용한다.
- 2) 평가결과 음(-)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E등급”점으로 평가한다.
- 3) “가”항의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음(-)의 수치인 경우에는 이를 “E등급” 평가한다.

- 4) “나”항의 평가시 유동부채가 “0”인 경우에는 “A 등급”으로 평가한다.
- 5) 부도, 파산 또는 기타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상태 평가에서 제외한다.
- 6) 관련협회가 없거나 해당연도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는 사전심사기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가 가능하다.
-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공사는 8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1억원미만)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에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 가능하다

[붙임 5-1] (개정 2014.3.3.)

추정가액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공사는 3억원미만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1억원 이상)

평가요소	평가등급	배점	비고
가. 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A. 100% 미만	3.0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부채비율
	B. 130% 미만	2.7	
	C. 160% 미만	2.4	
	D. 190% 미만	2.1	
	E. 190% 이상	1.8	
나.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 100% 이상	2.0	업종별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유동비율
	B. 90% 이상	1.8	
	C. 80% 이상	1.6	
	D. 70% 이상	1.4	
	E. 70% 미만	1.2	

< 주 >

- 1) 평가요소별 업체평균비율은 관련협회에서 발표한 업체평균비율로 하되, 최근년도 업체 평균비율 발표이전까지는 종전 평균비율을 적용한다.
- 2) 평가결과 음(-)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E등급"점으로 평가한다.
- 3) "가"항의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음(-)의 수치인 경우에는 이를 "E등급" 평가한다.

- 4) “나”항의 평가시 유동부채가 “0”인 경우에는 “A 등급”으로 평가한다.
- 5) 부도, 파산 또는 기타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상태 평가에서 제외한다.
- 6) 관련협회가 없거나 해당연도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는 사전심사기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가 가능하다.
- 7)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공사(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포함)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에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 가능하다

[붙임 6] (개정 2015.11.09., 2017.4.25., 2020.2.28., 2021.3.25., 2022.1.11., 2023.7.27.)

신 용 평 가 등 급 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되 다음의 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등급제한 이외공사	1)등급제한공사	
				종합공사업체	2)전문공사업체 등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34.5	34.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33.5	34.0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30.0	30.0

- 1) ‘등급제한’이라 함은 입찰참가자격을 시행령 제22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를 말함 (신설 2021.3.25.)
- 2) 전문공사업체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업체에 적용 (신설 2021.3.25.)

[붙임 7] (개정 2013.7.5., 2014.3.3., 2014.10.29., 2014.11.14., 2015.11.09., 2018.03.28.)

(삭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신인도 적용)

[붙임 9] (개정 2013.7.5., 2014.10.29., 2018.03.28., 2020.2.28.)

기타 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방법

○ 토목, 건축,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2점)

평가 요소	평가등급	배 점	비 고
가. 현장대리인 경력	적 정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 관련 [별표 5]에 의함 ▶ 전기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압100KV초과:고급전기공사기술자 이상 - 전압100KV이하:중급전기공사기술자 이상 ▶ 정보통신공사 : 중급기술자 이상 ▶ 소방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수첩을 발급 받은자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소방기술자
나. 현장관리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조직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대리인, 자재관리, 공무관리, 안전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노무관리 ▶ 품질관리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아래와 같으며 자격 미달시에는 평가인원에서 제외함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A : 5인 이상 B : 3인 이상	1.0 0.5	
· (삭 제)			
· (삭 제)			

○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평가 요소	토목, 건축공사 등	전기,정보통신공사 등	소방공사
가. 품질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관리자 배치인원 및 자격조건 적정 여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관련 [별표 5]에 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정보통신분야 공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분야 공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나. 안전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 제1항관련 [별표3] 및 제14조 관련[별표4]에 의거 요구내용이 적합하면 적정으로 평가함. ▶ 평가대상인력은 1인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별표 3] 및 제14조 관련[별표 4]에 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별표 3] 및 제14조 관련[별표 4]에 의함.

[붙임 12]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평가방법

- 1)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시 감점
- 2)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 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등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동 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함(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구성원 각자의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
 - 나)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다)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 3) 공동도급의 경우는 구성원중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1개사라도 포함되면 감점

[붙임 13] (개정 2014.3.3., 2015.11.09.)

시공실적 제출 및 평가방법

1. 동일공사의 증명방법

- 가. 동일공사 공사실적의 증명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적합한 실적증명으로 하되,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 나. “가”의 내용을 관련협회에 등록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이 “가”의 내용을 공사관련 주무기관장에게 통보한 내용을 관련협회가 확인하는 경우 관련 협회의 확인서도 가능하다.
- 다.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 제 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하며,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 라. 하도급공사 : “가” 또는 “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2. 동일공사 시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 가.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에는 인·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서(도급계약서 포함). 다만, 발주자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로 같음.
- 나. 건축공사실적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국내공사의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 제출
- 다. 시공실적증명서에 공사금액(준공 및 관급)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투입된 공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제시 및 사본제출
- 라. 공동계약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제시 및 사본제출
- 마. 해당공사 실적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 : 시공실적증명서의 내용 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생략 가능
- 바. 국외공사인 경우에는 외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매매기준을 증명서 제출
- 사. 시공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한국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로 번역 및 공증서류 제출

3. 시공실적 심사방법

가. 공통사항

- (1) 심사의 대상 : 동일공사의 준공(기성)실적
- (2) 시공실적심사는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제출된 실적증명서등의 심사시 설명, 확인등의 입증책임은 시공실적을 제출한 해당 업체에 있다.

나. 동일공사의 실적규모 인정

1건의 동일 용도의 단위구조물(체)로서 동 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라 함은 단위 계약건중 시공실적 심사기준에 부합되는 각 단위구조물(체)를 말한다.

다. 동일공사의 실적금액 인정

- (1) “나”에 의한 실적인정 규모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실적금액으로 인정하며 도급자 설치 관급(지급)자재 금액을 포함한다(단, 전기, 통신, 신호는 공사금액만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준공금액·관급금액 미기재 및 불분명한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2) 국외공사인 경우에는 준공일 기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매매기준율)로 환산·적용한다.

라. 공동계약의 실적 인정

-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적격심사신청한 경우 구성원 각각의 실적은 구성원의 실적(규모 및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한 실적만 인정한다.
- (2)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 규모 및 금액의 실적인정은 시공비율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분리하여 시공한 경우로써 입증서류(공동수급체의 시공내용을 기재하고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발주기관이 증명한 실적증명서, 발주기관의 분리시공 승인서류등)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도급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첨부)
- (3)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 기본요소(예 : 교량의 경우 경간등)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모두 인정하되, 시공비율에 의한 시공규모가 기본요소 미만인 경우는 실적으로 불인정한다(예 : 해당실적이 경간 50m, 길이 200m의 교량이고 지분율이 20%일 경우 해당지분 실적이 40m이므로 경간 50m 실적은 불인정 한다)
- (4)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분담내용대로 인정한다.
- (5) 적격심사의 경우 공동도급 또는 종합건설업자간 하도급으로 시공한 공사가 해당 동일공사에 해당되어 공동으로 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1건실적으로 인정하여 각각 시공한 비율만큼 인정하고, 인정된 실적을 해당공사의 심사에 적용하는 시공비율을 곱하

여 산출된 실적만큼 인정한다.

마.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 (1) 종합건설업자(전기·통신·소방·문화재공사업자 등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종합건설업자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2) 실적대상구조물인 교량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철강재설치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97년 7월 10일 이전에 철강재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 부분을 제외한 공사금액을 해당 교량공사의 실적으로 인정하며, 동 교량실적에 대한 규모(량)는 하도급부분을 제외한 공사금액이 해당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해당 규모(량)에 곱하여 산출한다.
- (3)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전기·통신·소방·문화재공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계속공사로 준공한 공사의 실적 인정

단일구조물공사를 연차별로 분할 발주한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시공한 해당 공사와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을 1건 실적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각 단위구조물(체) 별로 공사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된 “별지 제4-1호서식”의 “주, 7)”에 의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사.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실적인정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실적인정은 원칙적으로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되,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이라도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인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아. 업종별 실적인정

- (1) 건설산업기본법령(구 건설업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에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 (2)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 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공사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 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시공실적으로 인정한다.

자.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 (1)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합병등을 한 업체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

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우리공단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① 합병등의 경우에는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한다.
- ②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 ③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별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부도등 따른 실적인정

시공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계약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계약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계약비율이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보증시공 등으로 잔여공사가 시공된 경우에는 잔여공사 중 자기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 (1) <삭제>
- (2) <삭제>

4. 기타사항

본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사의 특성에 따라 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 처리할 수 있다.

[붙임 14] (개정 2013.7.5., 2014.3.3., 2015.11.09)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행 기 관	비 고 (증빙서류번호)
총괄	1	적격심사신청서 (소정양식)	신 청 자	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소정양식)	신 청 자	별지 제2호서식
	3	업체현황조서 (소정양식)	관 련 협 회	별지 제3호서식
시공실적	4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 명세서	신 청 자	별지 제4호서식
	4-1	시설공사 시공실적 증명서 (소정양식)	발 주 기 관	별지제4-1호서식
경영상태	5	경영상태등의 확인서 (소정양식) (최초,월말,반기,년말) 검토보고서 (소정양식) 신용평가자료 (기업어음 또는 회사채) 또는 기업신용평가	관 련 협 회 신 청 자 신용평가기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신인도	6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관 련 협 회	
	7	우수하도급 수상 증명서 (필요시)	신 청 자	
	8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결과	건 설 협 회	
	9	하도급 불공정거래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10	입찰참가자격제한(최근 2년간) 확인	관 련 협 회	
	11	업체별 재해율 증명서	"	
	12	산업안전관리비 적용의무 위반 확인서	"	
	13	환경관련제재처분 확인	관 련 협 회	
	14	녹색기술관련 인증서 사본 및 확인서	인 증 기 관	
	15	영업정지처분 확인	관 련 협 회	
16	부실벌점내역 확인	관 련 협 회	퀘도(건설산업정보센터)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 기관	비 고 (증빙서류번호)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17	산출내역서 (소정양식)	신 청 자	별지 제8호서식
기타 공사관리계획	18 19	현장관리 조직표 현장인력관리계획서 (소정양식)	신 청 자 신 청 자	별지 제7호서식
하도급관리계획 (전문, 전기, 정보통신공사 제외)	20	하도급계획서 ※ 하수급인별 하도급 공종 및 해당공종의 입찰금액, 하도급예정금액, 하도급율 등 하도급사항을 명시할 것	신 청 자	
취업제한 대상자 고용확인서	21	취업제한 대상자 고용확인서	신 청 자	별지 9호 서식
기타증명		공고서상 요구 또는 필요한 경우		

- ※ 주 1) 연번 1, 2, 3, 4, 4-1, 5, 6, 7는 소정양식에 의거 제출
 2) 연번 8, 10, 11, 12, 13, 15, 16은 공단에서 일괄조사·적용 할 수 있음.
 3)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제출

[별지 제1호서식]

적격심사신청서

- 관 리 번 호 :
- 공 사 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공사입찰과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관련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불입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공동수급체구성원의 제출서류 포함)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 공단의 낙찰적격심사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0 . . .

제 출 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 호 또는 명 칭 :
전 화 번 호 :
F A X 번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첨 부 :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귀하

----- (절 취 선) -----

(인)

접 수 증

1. 관 리 번 호 :
2. 공 사 명 :
3. 제 출 자 :

위 건 공사의 적격심사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국가철도공단 계약담당 (인)

[별지 제2호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가. 대 상 공 사

관 리 번 호		입 찰 일 시	
공 사 명			

나. 종 합 평 가

구 분	당 해 공 사 수 행 능 렷	시 공 계 획 의 적 정 성	결 격 사 유	입 찰 가 격	종 합 평 점
자기평가평점	점	점	점	점	점
심 사 평 점	점	점	점	점	점

다.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 성 원 Ⅰ (대 표 자)	구 성 원 Ⅱ	구 성 원 Ⅲ
① 회 사 명			
② 대 표 자	(인)	(인)	(인)
③ 이 행 방 법			
④ 이 행 내 용 (시 공 비 율)			
⑤ 시공능력평가액			
⑥ 5년간 실적금액			
⑦ 보유면허 및 번호			
⑧ 전 화 번 호			
⑨ F A X 번 호			
⑩ 주 소			
⑪ 작 성 자			

※ 공동수급체 구성업체의 수에 따라 양식조정 가능

[별지 제3호서식]

업 체 현 황 조 서

상 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보 유 등 록 (면 허) 현 황						
업 종		등록(면허)번호	취득년월일	시공능력평가액	평 가 순 위	비 고
토목건축공사업						
토 목 공 사 업						
건 축 공 사 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준 설 공 사 업						
조 경 공 사 업						
해 외 건 설 업						
전 기 공 사 업						
정보통신 공 사 업	일 반					
	별 종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						
대기분야환경전문공사업						
소음·진동분야환경전문공사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소방시설 공 사 업	전 문					
	일 반	기 계				
		전 기				
전 문 건 설 업						

위 회사에 대하여 우리협회에 등록·확인·제출·통보·신고·조사된 내용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 협회장 (인)

※ 주 전문건설업에는 관련업종기재

[별지 제4호서식]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 명세서

회 사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업 종 별 면 허 번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최근 5년(3년)간 시설공사 실적금액 내용						
구 분	건 수	공사금액 (만 원)		비 고		
200 년도				1. 입찰공고일 직전년도말 기준 최근년도 순으로 기재하되 관련협회의 최종 통계완료년도를 기준으로 기재 2. 입찰공고상의 해당공사만 기재 예)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만 기재, 전기공사일 경우 전기공사만 기재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작성 4. 실적금액은 당해년도 실적금액 기재(실적증명서는 별지 제7-1호서식을 사용하며 내용에 업종(면허)별 실적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200 년도						
200 년도						
200 년도						
200 년도						
합 계						
붙 임 연도별 시설공사 준공실적 매						
위와 같이 최근 5년(3년)간 우리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시공실적 명세서(증명서 포함)를 제출합니다.						
2 0 0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						

(주) 연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명세서 작성은 연도별 최근 시공완료일 순서대로 작성하시고, 발주기관, 공사명, 시공금액, 관급금액, 시공금액(준공+관급), 공사내용(공사종류 구분 가능 하도록 요약)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4.3.3.)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I. 일반적인 사항							
1) 공 사 명				2) 발주기관 (발 주 자)			
1-1) 공사위치							
3) 시 공 자 (대 표 사)		3-1) 회 사 명		3-2) 대 표 자		3-3) 면허번호	
		3-4) 영업주소				3-5) 전화번호	
4) 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공사는 총공사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년 차(금 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 공사 성 질	건 설	신규공사(), 확장공사(), 개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전 기 통 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7) 실적종류		개념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감리(), 품질·공사관리(), 시운전(), 기자재제작설치(), 기자재설치(), 기타()					※ 해당란에 ○표
II. 시공실적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 표 자)	시 공 자	시 공 자	시 공 자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자	(인)	(인)	(인)	(인)	(인)	(인)	
3) 공사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 준공금액							
3-2) 관급금액							
4) 전 체 공 사 시공규모(구 체적인시공 물량표시)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구 분	시 공 자 (대 표 자)	시 공 자	시 공 자
5)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P·Q공종시공 규모방법(공법)			
6)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P·Q 공종의 금액			
6-1) 시 공 회 사 별 실적공종 또는 P·Q 공종의 준공금액			
6-2)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P·Q 공종의 관급금액			
7) 하도급내용	* 하수급자별로 구분 작성		
7-1) 하도급자			
7-2) 하도급 공사 규모 및 내용			
7-3) 하도급 금액 (준공+관급)			
Ⅲ. 붙 임			
기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p> <p style="text-align: right;">〈 신 청 인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p> <p style="text-align: center;">귀 하</p>			
<p style="text-align: center;">위 내용을 증명합니다. 200</p> <p style="text-align: center;">(발 급 기 관 명)</p>			

< 주 >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하다.
- 2) 해당공사 시공실적 평가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등의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3) 합병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4) 본 실적증명서의 붙임이 없는 경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5)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 6)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한다.
- 7)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 10년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 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한다.
- 8) 공동도급으로 시공한 실적의 경우에는 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경 영 상 태 등 의 확 인 서

회 사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업 종 별 등 록 번 호	토 건	토 목	건 축	시 공 능 력 평 가 액	토건공사액	토목공사액	건축공사액
	제 호	제 호	제 호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 영 비 율	산 출 근 거 (단 위 : 천 원)	
부 채 비 율		타 인 자 본	자 기 자 본
유 동 비 율		유 동 자 산	유 동 부 채
고정자산대 고정부채비율		고 정 자 산	고 정 부 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 매 출 액
매출액영업이익율		당기영업이익	총 매 출 액
총자본회전율		총 매 출 액	총 자 본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 매 출 액

발급기준 경영 항목 : 200 년 월 일 기준 (결산서, 반기결산서, 수시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실적 업 종 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 자본금					

위 내용은 건설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 협 회 장 (인)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7.5.)

(최초, 월말, 반기, 연말)결산서 검토보고서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업 종 별 등 록 번 호	토 건	토 목	건 축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 영 비 율	산 출 근 거 (단 위 : 백만원)	
부 채 비 율		부 채 총 계	자 기 자 본
유 동 비 율		유 동 자 산	유 동 부 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배율		영 업 이 익	이 자 비 용
매출액영업이익율		영 업 이 익	총 매 출 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 매 출 액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 자 산
총 자 산 대 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총 자 산
자 산 회 전 율		매출액	$(\text{기초총자산} + \text{기말총자산}) \div 2$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 매 출 액

2. 검 토 기 준

- 가. 결산서 작성사유 :
- 나. 결산서 종 류 :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 라. 감 사 의 견 : 적 정, 한 정, 부적정, 의견거절등 명시

위 내용은 위 기재 업체의 최근에 업체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반기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사 무 소 :
주 소 :
전화번호 :
감 사 인 : (인)

※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별지 제7호서식]

현 장 인 력 관 리 계 획 서

구 분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비 고
성 명				
소 속				
직 위				
주민등록번호				
자격증종류 (취 득 일)				
최 종 학 력				
전 공				
졸 업 년 도				
관련기술전문 분야 경력				

< 주 >

- 1)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는 경력사항 확인서 첨부(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2)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관련기술자는 자격증 사본(변동사항 포함) 첨부

[별지 제8호서식]

산출내역서 집계표

○ 공사원가계산서 기준

항 목 별	금 액	비 고
1. 순 공 사 원 가	0000원	
1-1. 재 료 비	0000원	
1-2. 노 무 비	0000원	
(1) 직 접 노 무 비	0000원	
(2) 간 접 노 무 비	0000원	
1-3. 경 비	0000원	
(1) 산 출 경 비	000원	
(2) 산 재 보 험 료	000원	
(3) 고 용 보 험 료	000원	
(4) 퇴 직 공 제 부 금	000원	
(5)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000원	
(6) 기 타 경 비	000원	
(7) 국 민 건 강 보 험 료	000원	
(8) 국 민 연 금 보 험 료	000원	
(9) 건 설 하 도 급 보 증 수 수 료	000원	
-	000원	
-	000원	
2. 일 반 관 리 비	0000원	
3. 이 윤	0000원	
4. 공 사 손 해 보 험 료	0000원	
5. 부 가 가 치 세	0000원	
6. 총 계	00000원	

- 주) 1.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는 공종별(가설공사, 토공사,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첨부 하여야 하고, 구조물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구조물의 공종별 금액을 합산하여 표기 하여야 함
2.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는 공종별(가설공사, 토공사, ---)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별도 요청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9호서식] <신 설 2015.11.09.>

취업제한 대상자 고용확인서

회 사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취업제한 대상자 고용확인					
성 명	생년월일	공단퇴직일	직 급	담당업무	취업승인여부
붙 임 재직증명서 매					
<p>「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를 상기와 같이 고용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 0</p> <p style="text-align: right;">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p>					